

계룡시조례 ·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승인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, 규칙 및 예산(이하 “자치법규등”이라 한다)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전문) 자치법규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.

제3조 (조례) ①조례의 전문에는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

②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

제4조 (규칙)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

제5조 (예산 등)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.

제6조 (번호)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.

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, 규칙별로 누번 일련번호로 표시한다.

③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되, 그 방법은 별표와 같다.

제7조 (공포방법)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

제8조 (공포일)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.

제9조 (시행유예기간)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·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의회의장이 조례 공포시 번호 부여방법

구 분	방 법
1. 의회의장이 최초로 공포하는 경우	조례 공포 대장상 제300호까지 부여된 경우 : 조례 “301-1”호 부여
2. 의회 의장이 통산2번째로 공포하는 경우	조례 공포 대장상 제375호까지 부여된 경우 : 조례 “376-2”호 부여
3. 의회의장이 통산5번째로 공포하는 경우	조례 공포 대장상 제460호까지 부여된 경우 : 조례 “461-5”호 부여